

2001. 3. 26

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
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7	3. 17	3. 24	3. 26	농업정책 과장
충주시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에 관한조례안	"	"	"	"	경제건설 국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촌동 지역 농지관리위원들의 관할구역이 넓어 구역내 농지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어렵고,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의 신청시 인접동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곤란 및 원거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시 농촌동의 농지관리위원을 법정동 단위로 임명함으로서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현재 21명에서 28명으로 증원

나.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 2000.2.9일자 개정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

2) 주요골자

-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가능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에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 지역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시.읍.면단위로 위원의 정수는 4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농촌동의 농지관리위원을 법정동 단위로 임명하여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농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저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 안 제5조의 “설치허용 지역의 제한특례”조항은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에 국토관리 및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허가의 제한시는 제한기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5조의 제한특례 조항은 타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농지관리위원회가 시내동은 몇명인가?

- **답변** : 시내동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 : 충주시 법정동 수는?

- **답변** : 법정동은 28개동 임.

▶ **질의** : 농지관리위원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 **답변** :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고 농지관리위원회에 연간 120만원정도 지원함.

나.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질의 :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준농림지역내 이발소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답변 : 이발소등은 취락지역에 적용받음.

▶ 질의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 제4조3항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 : 양성면 돈산리 일대와 엄정면 목계 지역도 적용되는지?

○답변 : 완화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시 전체에 적용됨.

▶ 질의 : 이 조례에 대하여 상급기관에서 준칙이 내려왔는지?

○답변 : 내려오지 않았음.

▶ 질의 : 전문위원회가 제5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검토보고 하였는데 가능한지?

○답변 : 가능함.

▶ 질의 : 제4조의 외곽건물의 기준은?

○답변 : 건물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질의 : 타 시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답변 : 많은 시군이 제정하였으며 우리시가 늦은 편임.

5. 심사결과

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수정의결

6. 붙 임

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나.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수정안) 1부 .끝.

[별지]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중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설치허용지역의 제한특례) - - - ----- 제6조(수질오염 및 경관훼손고려) - - - -----	삭 제 제5조(제정안과 같음)